

7. 재혼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이혼이나 사별 후에 재혼을 할 것인가? 재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재혼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개인적 선택이 아닌가?
3. 재혼의 허용 정도는 해당 시대와 사회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 즉 비난을 받지 않는 재혼도 있다.
4. 고려에서 재혼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一夫從事 관념이 없었다. 守節은 남편 생전에만 적용되었다.

1. 왕비의 재혼

- 왕비의 재혼에 대해 살펴본다.

○ 문덕왕후 劉氏는 광종의 딸이다. 처음에 弘德院君에게 시집갔다가[適] 뒤에 성종의 배필이 되었다. (고려사 권88, 후비 1, 문덕왕후 유씨)

○ 숙창원비 金氏는 위위운 致仕 金良鑑의 딸이다. 姿色이 있었다. 일찍이 진사 崔文에게 시집갔는데[嫁]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 제국공주가 죽자 충선왕이 세자가 되어 幸姬 無比가 충애를 오로지 하는 것을 미워하여 죽이고 충렬의 마음을 위로하여 풀고자 하여 김씨를 들이고 후에 숙창원비로 봉했다. 충렬왕이 죽자 충선왕이 殯殿에 제사하고 드디어 妃의 형 金文衍의 집에 행차하여 妃와 함께 상대하여 시간이 느긋하니 사람들이 처음으로 의심하였다. 후에 10여일이 지나 문연의 집에 옮겨가 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淑妃로 進封했다. 妃가 밤낮으로 百態로 요염하게 아양을 부리자 왕이 미혹되어 친히 聽政하지도 않았고 드디어 명하여 八關會도 정지시켰다. (고려사 권89, 후비 2, 숙창원비 김씨)

○ 순비 허씨는 공암현인이며 중찬 珙의 딸이다. 일찍이 평양공 暄에게 시집가서[嫁] 3남 4녀를 낳았다. 暄이 죽으니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들였고, 즉위함에 미쳐 책봉하여 순비로 삼았다. (고려사 권89, 후비 2, 順妃 許氏)

○ 수비 權氏는 福州人으로 좌상시 衡의 딸이다. 처음에 密直商議 全信의 아들에게 시집갔다[嫁]. 衡은 全家를 불초하게 여겨 離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가 충숙왕 후4년

에 內旨를 칭탁하여 絶婚하고 드디어 왕에게 바치니 수비로 책봉되었다. 충숙왕이 죽자 충혜왕이 烝하였다. (고려사 권89, 후비 2, 壽妃 權氏)

2. 부녀의 재혼

- 부녀의 재혼에 대해 살펴본다.

- 법적 규제

○ 鎬京 문무 3품 이상의 妻로서 과부로 거하며 수절하는 자는 封爵하라 (고려사 권75, 선거지 3, 봉증지제, 목종 2년 10월)

○ 都堂이 啓하기를, “散騎 이상의 처로서 命婦가 된 자는 하여금 再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判事 이하에서 6품까지의 처는 남편이 사망하고 3년까지 再嫁를 허락하지 말고 어긴 자는 失節로서 坐하십시오. 散騎 이상의 첩 및 6품 이상의 妻妾으로서 자원하여 수절한 자는 門閭로 旌表하고 인하여 상을 더하여 내리십시오”라고 했다. (고려사 권84, 형법지 1, 戶婚, 공양왕 원년 9월)

○ 都評議使司가 上言하기를 “(중략) 이상의 命婦로서 남편이 사망하고 改嫁한 자는 封爵을 追奪하십시오 (하략)” 하였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3, 銓注, 凡封贈之制, 공양왕 3년 8월)

- 재혼 관념

○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志學이 되었으나 義父가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다른 학문을 시키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同業하게 하였다. 그 어미가 不可하다고 고집하며 말하기를 “첩이 衣食의 연고로 栢舟의 책망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遺腹은 다행히 지금 아이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아버지의 본래 무리에 속하여 발꿈치로 먼지를 뒤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곧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라고 하며, 드디어 그 뜻대로 용기있게 결단하였다. (李勝章 묘지명)

○ 지금까지 22년이 되었는데 묘에 誌가 없었습니다. 아, 文定이 후손이 없으니 더욱 슬픕니다. 부인 죄씨는 자식이 없으므로 따를 곳이 없고 따를 곳이 없으므로 守節하

기도 어려웠습니다. (安輔 묘지명)

○ 60년을 홀로 살았는데, 친척과 화목하고 僕妾에게 어질어 府君처럼 하였다. 당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어렸으나 가르치고 길러 성취하게 했다. (金須妻高氏 묘지명, 충숙왕 14, 1327)

○ 청주인 별장 趙德麟의 어머니 김씨는 나이 19세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모가 뜻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머리를 자르고 좇지 않아 守節한지 60여년이 되었다. 목사 金自粹가 아뢰어 마을 문에 旌表하고 덕린의 군역을 면제하여 그로 하여금 봉양하게 했다.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 다양한 사례

○ 딸이 3인인데, 長은 尙食直長 崔孝□에게 시집갔다[適]. 直長이 죽자 다시 試尙書刑部侍郎 知閣門事 李世延에게 시집갔다[嫁]. (金永夫 묘지명)

○ 內豎 朴仁平 역시 조적의 黨인데, 성품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 충숙왕의 총애를 받아 대호군이 되었다. (중략) 火者 楊安吉은 조적의 養子이다. 당시에 황제의 곁에서 用事하였다. 그 누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이미 오래 되었는데, 왕은 안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 남편을 내쫓고[黜] 인평에게 시집보냈다[嫁]. (고려사 권131, 반역 5, 曹頤)

○ 신돈의 2세 된 아이 및 신돈의 異父弟 姜成乙을 斬했다. (고려사 권132, 반역 6, 辛旽)

○ 廉興邦이 일찍이 異父兄 李成林과 함께 집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는데, 말을 탄 자가 따라가 길을 가득 채웠다. (고려사 권126, 열전 林堅味)

○ 황상은 아버지의 忌日에 元氏를 娶했고, 元氏도 世家의 딸로서 남편이 죽고 期年도 되지 않았는데 중매도 없이 裳에게 시집갔다. 憲司에서 탄핵하여 먼 고을에 杖流하기를 청하니 우왕이 허락하지 않고 다만 元氏만 유배하였다. (고려사 권114, 열전 黃裳)

- 양인의 재혼

○ 戶 學生金多式 年柒拾 本登州 父金仁祐故 祖金延故 曾祖金公故 母召史故 本同村 外

祖副戶長金祿故。 戶妻 四加伊 年陸拾 本文州 父朴英立故 祖朴松延故 曾祖不准 母福
莊故 本平昌 外祖戶長李閑有故。 并產 壹男金海 年貳拾 貳男玄奇 年拾肆 同金海同母
異父 兄李旦 年參拾 妻祿莊 年參拾 本順天。 戶各居同生妹金莊 年伍拾玖 次妹个貴
年 節付印 [右人矣段其矣口申以施行]